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53
----------	------

2020년 3월 5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2.4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노식래 의원 외 10명 찬성)

나. 회부일자 : 2020.2.12.

다. 상정 일자 : 제29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0년 3월 5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의장은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의원역량 개발센터와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로 함.
-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의원역량개발센터와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4년 단위 교육연수계획에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운영,
의원역량개발센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함(안 제5조).
- 교육연수위원회를 심의·자문기구로 그 기능을 조정하고, 교육연수
위원회 위원 구성과 총 인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
- 교육연수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김선희)

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¹⁾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는 2015년 초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의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임.
- 본 개정안은 현행 의원 교육연수활동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의회가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조례상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 취지를 담고 있음.

2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원 교육연수활동을 의회 자체 교육연수와 외부기관 교육연수로 구분하고(안 제3조제1항·제4항)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4조, 안 제5조제2항)하는 것임.
- 이는 그동안 주로 (공공·민간)위탁교육 형태의 의원 교육연수활동을 지원해왔던 것에서 의회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운영까지

1) 제14조(지방의회의 활성화와 지방선거제도의 개선) ①~② 생략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회 의장의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생략

하는 것으로 그 지원 영역을 확대하고자 함임.

- 조례 제명은 조례 내용을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표현돼야 한다는 점에서, 조례 내용을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 제명을 교육연수활동과 관련된 지원·개발·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는 ‘교육연수활동 등’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임.

3

의회 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 의원역량개발센터와 관련 전문가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안 제4조, 안 제5조)

- 안 제4조는 ① 의장으로 하여금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의회 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② 이를 위해 의원역량개발센터(이하 “센터”)와 교육 관련 전문가를 운영할 수 있으며 ③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다른 기관·단체 등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4년 단위 교육연수 기본계획에 ①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운영에 관한 사항과 ② 센터 관리·운영·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음.
- 의회는 조례 제정 이후 2019년까지 교육연수과정을 공공위탁(2019년부터는 민간위탁도 가능)과 의회 자체교육으로 구분해 운영해왔음.
- 그러나 위탁교육의 경우 수요자인 의원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에 일일이 부응하기 어려웠고 참여율 또한 저조했으며(공공위탁 기준 2017년 7명, 2018년 36명, 2019년 12명), 의회 자체교육의 경우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정으로 구성하기 보다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과정에 머물렀음(표-1).

<표-1> 최근 3년간 의회 자체 교육연수 상황

연도	교육과정	교육일시	참여인원
2019	청렴특강(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변화하는 국민 인식)	4.30.	시의원, 사무처 직원 120명
	폭력예방교육(일상의 폭력들에 예민해도 괜찮아)	5.23.	22명
2018	공직선거법 특강	2.28.	9명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청렴, 성희롱 등) 특강	7.6.	110명
	제1회 의정아카데미	8.31.	60명
	제2회 의정아카데미	11.1.	32명
2017	공직선거법 특강	10.31.	11명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교육	10.31.	8명

출처 : 2019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의회사무처) 자료

- 이러한 상황에서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의원의 교육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의회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필요한 경우 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정에 따라 다른 기관·단체가 센터 운영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센터 설치 등의 문제는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과 활용에 대한 정확한 수요와 활용방안이 마련된 이후 이를 반영해 논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4 교육연수위원회를 심의·자문기구로 기능 조정,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구성·인원·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방법 변경(안 제8조)

- 안 제8조는 교육연수위원회의 기능을 ‘자문’에서 ‘심의·자문’으로 조정

하고, 추가된 심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현행 조례에 따르면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의원 교육연수 정책,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교육연수 사업 등 의원 교육연수에 대한 각종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구성(제7조)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조례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연수 기본계획을 확정·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사실상 위원회가 이미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자문’→‘심의·자문’)해 현행화함으로써 조문 간 내용의 통일성을 갖출 수 있을 것임.
 - 위원회 구성 인원을 짝수(10명)에서 홀수(9명)로 조정하고, 위원 구성을 구체화(자격요건별 3명 이내)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이해됨.
 - 위원장을 의원인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민간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도록 한 것은 의회 내 심의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계약투명성 심의회, 홍보물 편집위원회 등)의 선출 방법을 따른 것으로 보임.

5 교육연수위원회 회의 개최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신설(안 제9조)

- 안 제9조는 위원회 회의 소집 시기와 방법,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음.
-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²⁾에

2) 제7조(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4. 생략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따라 현행 조례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표결권 유무 등에 대한 사항을 새로 정하고 기존의 조문을 재구성한 것으로 보임.

6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의회가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구와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조례상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개정 취지가 전반적으로 타당하고 그 내용도 적절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토 론 요 지 : 생략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13명 전원 찬성)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6.~7. 생략

② 생략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3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4일

발 의 자 : 서윤기 의원(1명)

찬 성 자 : 노식래·이영실·박기재·박순규·
양민규·오중석·이동현·임종국·
한기영·홍성룡 의원(10명)

1. 제안이유

의장은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의원역량개발센터와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로 함.
- 나.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해 의원역량개발센터와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다. 4년 단위 교육연수계획에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시행 및 운영, 의원역량개발센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교육연수위원회를 심의·자문기구로 그 기능을 조정하고, 교육연수위원회 위원 구성과 총 인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8조).
- 마. 교육연수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교육연수활동의 지원에”를 “교육연수활동에”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연수 사업”을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연수”를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의원역량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의원역량개발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 전단 중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2호) 중 “교육연수”를 “외부기관 교육연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3호”를 “제2항제5호”로 한다.

2.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역량개발센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제6조(중전의 제5조)제1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하기”를 “심의·자문하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타당성”을 “수립·변경”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맞”을 “등 추진실적 점검 맞”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명”을 “9명”으로, “구성하고”를 “구성하되”로, “사람, 의원”을 “사람 3명 이내, 의원 3명 이내”로, “중”을 “3명 이내의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 중에서”를 “의원인 위원,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과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개별적으로”를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 중 “교육연수 활동 지원”을 “교육연수활동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u></p>	<p><u>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회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u>교육연수활동의 지원</u> <u>에</u>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p> <p>제3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 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 상을 위한 <u>교육연수 사업</u>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을 해야 한다.</p> <p>②·③ (생략)</p> <p>④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 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u>교육 연수</u>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p> <p><u><신설></u></p>	<p>제1조(목적) ----- ----- ----- ----- <u>교육연수활동</u> <u>등에</u> ----- -----.</p> <p>제3조(기본원칙) ① ----- ----- ----- ----- <u>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u>-----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외부 기관의 교육연수</u>----- -----.</p> <p><u>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u> ① <u>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 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 자체 교</u></p>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
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7
조에 따른 교육연수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확정·시행해야 한다. 기
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략)

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 등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의원역
량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
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관련 전문
가를 둘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의원역량개발센터의 전문적
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성
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으
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교육연수 기본계획) ① -----

----- 제
8조-----

② -----

1.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 6. (생략)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생략)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과정과 과정별 교육연수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④ (생략)

제6조 (생략)

2.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의 개발·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역량개발센터의 관리·운영 및 업무대행에 관한 사항

4. 외부기관 교육연수-----

5. ~ 8.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③ ---- 제2항제5호-----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연수 시행계획) ① -----
- 제5조-----

-----.

② ----- 제7조제1항-----

-----.

③·④ (현행과 같음)

제7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7조(교육연수위원회) 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의회 의원 교육연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생략)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타당성
3. 교육연수 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
4. (생략)

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회 교육연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의원, 그 밖에 지방의회와 관련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교육연수위원회) ① -----

----- 심의·자문하기 -----
-----.

1. (현행과 같음)
2. ----- 수립·변경
3. ----- 등 추진실적 점검 및 -----
4. (현행과 같음)

② ----- 9명 -----
구성하되 -----
----- 사람 3명 이내, 의원 3명 이내 -----
----- 3명 이내의 범위 -----.

③ -----
----- 의원인 위원,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
중에서 각각 -----.

<삭 제>

⑤ (생략)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예산 지원) 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⑤ (현행과 같음)

<삭제>

제10조(예산 지원) ① -----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장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경우에 위원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용하거나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 교육연수 활동
등-----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같은 조례안 제4조(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제1항 ‘자체 교육연수프로그램’은 해당사업을 기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대상 아님

- 같은 조례안 관련 기 추진사업

(단위:천원)

사업명	내 용	2020년 사업비
의원역량개발(공공위탁, 자체교육, 민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교육기관 위탁교육 ○ 의원역량강화 자체교육 ○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운영 (서울시의회 과정, 의정실무 과정, 조직개발 과정) ○ 민간기관 위탁교육 	233,800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187,99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87,990천원으로 연평균 37,598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조례안 제4조 제2항 의원역량개발센터의 설치 장소는 시의회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운영은 2020년 서울시인재개발원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를 준용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1) 총 비용 ≙ 187,990천원(연평균 37,598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의원역량개발센터 운영 (제4조제2항)	37,598	37,598	37,598	37,598	37,598	187,990
	소계(b)	37,598	37,598	37,598	37,598	37,598	187,990
□ 총 비용(b-a)		37,598	37,598	37,598	37,598	37,598	187,990

2) 의원역량개발센터 운영 ≙ 187,990천원

$$\text{○ 5년간 교육·홍보 비용} = \sum_{i=1}^5 (\text{연간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 ~ 2025년)

- 연간비용 ≙ 37,598천원 × 1식 = 37,598천원

※ 서울시인재개발원 2019년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37,598천원을
준용하여 산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예산분석팀장 정한섭

주 무 관 김민호

☎ 02-2180-7932

e-mail : waterkim@seoul.go.kr